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33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박성민 · 박준태 · 구자근
박형수 · 이양수 · 윤영석
엄태영 · 박성훈 · 정동만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맡아 왔음.

그러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된 후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의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 등으로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특권 축소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 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등 신분 보장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 호선될 당시 대법관인 경우에는 그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때 위원장직에서 퇴임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委員長이 事故”를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호선될 당시 대법관인 경우에는 그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위원장직에서 퇴임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퇴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호선될 당시 대법관이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그 대법관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에 위원장직에서 퇴임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폐지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각
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條(委員長) ① (생략) ②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委員長은 당해 選舉管理委員會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③·④ (생략) ⑤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常任委員 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常任委員·副委員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중에서 臨時委員長을 互選하여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 第13條(委員의 身分保障)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은 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 또는 國民投票案公告日로부터 開票終了時까	제5조(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호선될 당시 대법관인 경우에는 그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위원장직에서 퇴임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 ----- ----- ----- -----. <삭 제>

지 內亂・外患・國交・爆發物
・放火・麻藥・通貨・有價證券
・郵票・印章・殺人・暴行・逮
捕・監禁・竊盜・強盜 및 國家
保安法違反의 犯罪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現行犯人이
아니면 逮捕 또는 拘束되지 아
니하며 兵役召集의 猶豫를 받
는다.